

# 부품·소재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및 확인요령

- 산업자원부 -

## 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 제도의 운영 방향

### ■ 부품·소재육성정책의 정책대상(policy target)을 부품·소재전문기업으로 명확화

·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은 세계적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창출에 있는 만큼 부품·소재 전문기업을 정책의 고객으로 인식한다.

### ■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영세 기업에 대한 image making

· 협력업체 또는 대기업에 종속적으로 인식되었던 부품업체나 소재업체에 대해 「부품·소재 전문기업」이란 title을 부여, 동 기업의 대외

적 이미지를 제고한다.

※ 부품·소재전문기업 title 부여 → 명칭의 고유 brand화

##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

### 1.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

16개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기술자생력의 배양을 지원 한다.

구 분	지 원 내 용
파 견 지 원	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의 기업현장 상주 파견
기 술 자 문	현장 애로기술의 해결을 위한 기술정보 제공, 출장지원 등
선진기술전수	선진기술 전수를 위한 연구인력의 해외파견 지원

부품·소재전문기업은 이 경우 파견된 우수 연구원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부여가 가능하다.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종업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과제 특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사업소득에서 제외)

## 2.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투자 지원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시제품생산, 양산라인 도입 등을 위한 유동성 자금을 지원한다.

산업기반기금(100억원)과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200억원)의 출자를 통해 민간 투자기관들이 약 100억원 규모의 전문투자 펀드 7~10개를 결성할 예정이다.

※ 2002년 중 10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될 예정

## 3. 대학 교수 및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제도를 활용, 부품·소재전문기업으로 채용 가능

관계 법령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의 기간으로 대학교수 등도 부품·소재전문기업에 근무가 가능하며 복직도 법적으로 보장된다.(부품·소재특별조치법 제13조)

또한 대학교수,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등을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임·직원으로 겸임 또는 겸직하게 할 수 있다. (부품·소재특별조치법 제14조)

## 4. 부품·소재산업육성 설비자금(산기반기금) 용자 사업 우대

부품·소재전문기업이 해당 부품·소재를 개발 완료 하였거나 기 생산하고 있는 부품·소재의

설비능력확대 및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시설투자가 필요한 경우 우대한다.

총 700억원의 규모로 연 5.00 %(변동금리)의 금리에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으로 지원 (동일인 한도 : 20억원 이내)한다.

## 5. 부품·소재수출Leading Company 선정, 부품·소재기술상, 무역의 날 포상, 우수자본재개발자 유공자 시상 등 정부의 포상 대상자로 우선적으로 고려

각종 포상 제도의 수상 대상자로서 부품·소재전문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들을 우대하는 시책을 추진한다.

특히, 수출비중이 높거나 수출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들을 Leading Company로 선정하는 「부품·소재수출Leading Company 제도」에 부품·소재전문기업을 적극 추천한다.

## 6.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및 신뢰성향상 참여의 기회 제공

부품·소재전문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및 부품·소재신뢰성향상사업을 상세히 안내하여 동 기업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며 동기업의 참여 시 우선적 지원 가능성을 검토 한다.

※ 좋은 정부 제도가 있음에도 기업들이 이를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애로 사항 해결

◆ 부품·소재전문기업을 Network하여 전문기업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정부지원 프로그램·금융·세제·전시회·마케팅·기술혁신 등의 종합적 consulting 지원

## 7. 부품·소재산업의 수출확대 및 투자유치와 관련된 정부시책에 우선적 참여 기회 제공

제 1회 한국 부품·소재종합전시회 개최시 부품·소재전문기업 참가시 우대 조치한다.

부품·소재투자유치단 파견 및 대 중국 부품·소재시장개척단 파견시 부품·소재전문기업 우대한다.

###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2-호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소재전문기업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소재전문기업의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청인"이라 함은 부품·소재전문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2. "증명기관"이라 함은 부품·소재전문기업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발급하는 자를 말한다.

3. "추천기관"이라 산업발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단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신청)

- ① 부품·소재전문기업(이하 "전문기업"이라 한다)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서발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 서식의 검토의견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감사보고서 1부(세무사·경영지도사가 확인·증명한 경우는 검토의견서, 공인회계사가 확인·증명한 경우는 감사보고서)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 그밖의 신청인은 상법 제447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부품·소재의 실제 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기관에 확인 요청한 날부터 이에 대한 회신일까지는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증빙 서류)

- ① 신청인은 제2조의 확인 신청을 위하여 공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개업을 신고한 자에 한하며, 이하 “증빙기관”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신청인은 제3조제1항제1호의 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증빙기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기업현황조사표(별지 제3호 서식)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 2. 부품·소재매출액 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 ③ 본 요령에서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기준은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제5조(매출액의 범위 등)

- ① 부품·소재 전문기업등의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매출액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것을 말한다.
- ② 부품·소재 전문기업등의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자기계열회사의 범위에 동 기업집단의 해외 계열사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확인서의 유효기간) 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7조(확인서 재발급)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문

기업인 개인사업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사유로 확인서의 재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 1. 업체명 또는 소재지 등 기재사항의 단순변경을 요하는 경우 (대표자 변경은 제외)
- 2. 당해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개인사업자가 신설되는 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문기업인 법인이 유효기간중에 업체명, 대표자 또는 소재지 등의 단순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재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재발급하는 경우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에 발급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8조(전문기업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등)

- ① 전문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전문기업이 전문기업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도 제4조 각호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재발급된 전문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9조(사후관리 등)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신청서의 검토 과정에서 신청인 또는 확인기관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 등으로 작성되었다고 의심이

가는 경우 신청인, 증명기관 또는 추천기관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하여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확인서를 발급한 이후 해당 기업이 전문기업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실사 또는 서류조사 등의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현장실사 또는 사후 관리를 통해 다음 각호의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당해 기업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을 아니하거나 이미 발급된 확인서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위조 등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2. 증명기관 또는 추천기관이 발급한 서류의 내용과 실제 운영하는 사업이 현격히 다를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업에게 이를 알려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전문기업 명단비치)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기업의 명단을 비치하여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의 위임)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기업의 확인을 위하

여 필요한 업무의 일부인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천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전문기업 확인 신청서 접수 및 확인서 재발급에 관한 업무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업무
3. 그밖에 전문기업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추천기관이 행하는 제1항의 위임 업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추천기관의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 <부 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첨은 [www.eiak.org](http://www.eiak.org)의 공지사항 참조